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91호 2022. 8. 11.(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857호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 1
- 사천시 조례 제1858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 사천시 조례 제1859호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28
- 사천시 조례 제1860호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30
- 사천시 조례 제1861호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37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2-16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및 변경승인 사항 고시 - 41
- 사천시 고시 제2022-16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 42

회 람																				
--------	--	--	--	--	--	--	--	--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사천시 조례 제1857호

제26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8월 1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
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
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민간위탁 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청사관리, 검침, 주차시설,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 단순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에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천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

3.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4.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제2항에 따른 심의가 완료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최소 1명 이상 포함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간위탁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5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제8조 제2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20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8조(고용승계) ①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이 고용했던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고용승계 시 새로운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제1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0조(운영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내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처리지침 등)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을 전달해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4조(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할 수 있다.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사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② 사천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⑧ 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5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⑬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⑭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⑮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⑯ 사천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⑰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⑱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⑰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⑱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⑲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⑳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㉑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㉒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개정한다.

제17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③⑩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⑪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2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⑫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⑬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⑭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로 한다.

㉔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사천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㊳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㊴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로 한다.

④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를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⑤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⑥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를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⑦ 사천시 노산 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를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⑧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제13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7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제10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후단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사천시 조례 제1858호

제26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8월 1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를

“사용하려는 자가 여럿인 경우”로, “허가 한다”를 “허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직장”을 “정관, 회원 명단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직장”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제10조제2항 단서 중 “국민체육센터”를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일자에 체육시설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고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20조의2 중 “국민체육센터”를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22.8.11.>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제18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80%	
○ 사천시유도체육관은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유도전용 훈련장으로 이용하거나 각종 대회 유치목적으로 사용할 때	80%	
○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의 출전일 14일 이내 훈련	80%	
○ 사천시체육회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의 정기대회 (연1회)	80%	
○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 훈련팀에 제공하는 경우	80%	
○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50%	
○ 아래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50%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	
○ 경로대상자, 어린이, 학생, 군인 (이용자 및 전용사용자 모두 감면대상자일 경우 적용)	50%	별표1 수영장 이용료 별도 적용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50%	수영장만 적용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0%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5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50%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20%	수영장만 적용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수영장만 적용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5% 추가 할인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사천시 조례 제1859호

제26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8월 1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1. “기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지사·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해외품질규격인정 지원)”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을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관, 단체, 협회”를 “기관·단체·협회”로, “국내”를 “국내·외”로, “부스임차료”를 “부스 임차료”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원금액과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사천시 조례 제1860호

제26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22년 8월 1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를 말한다.

제3조(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등)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이하 “가로수의 조성·관리”라 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을 한 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가로수의 조성·관리의 비용 부담)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가로수의 조성·관리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시장은 훼손자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회복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100주 이상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시숲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나.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 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에게 해촉일자, 해촉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은 이 조례에 따른 승인으로 본다.

[별표] <개정 2022.8.11.>

비용의 산정기준(제4조 관련)

부과구분	부과대상	시행구분	부과금액 산출	비용 부담방법	비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4조제1항)	1. 옮겨심기	원인자	하자 시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원인자부담금 비용 예치	
	2. 제거	원인자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원인자부담금 비용 납부	
원상회복 명령에 의한 경우 (제4조제2항)	1. 훼손율이 50%이상 되어 도시숲등으로 가치가 없는 경우	훼손자	원상회복을 위한 도급공사비	직접 원상회복 및 훼손자부담금 비용 예치	
		관리청	원상회복을 위한 도급공사비	훼손자부담금 비용 납부	
	2. 훼손율이 20%이상 50%미만의 경우	관리청	해당 수목(시설)가격 20%이상 50%미만 + 재료비 + 작업비	훼손자부담금 비용 납부	
		관리청	해당 수목(시설)가격 20%미만 + 재료비 + 작업비	훼손자부담금 비용 납부	
3. 훼손율이 20%미만의 경우	관리청	해당 수목(시설)가격 20%미만 + 재료비 + 작업비	훼손자부담금 비용 납부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급공사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을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2. 수목(시설)가격: 고시된 조달단가 가격, 가격이 없을 경우 가격정보, 물가정보, 견적가 등 시중가격 적용 3. 비용 납부: 부담금 고지서 납부 4. 비용 예치: 부담금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예치 5.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하자책임 담보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하자책임 담보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원인자에게 담보금을 환불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서식] <개정 2022.8.11.>

[] 심고 가꾸기
 [] 옮겨심기
 가로수 사업 [] 제 거
 []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남, 여)	
	주소 (소재지)				연락처	
사업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수량	본	
	기 타					
사 유						
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p>「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사천시장 귀하</p>						
<p>※ 구비서류</p> <p>1. 사업계획서 1부</p> <p>2. 위치도 1부</p> <p>3. 현황도 1부</p> <p>4. 관련 인·허가 서류 사본 1부</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사천시 조례 제1861호

제26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8월 1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27조”를 “제27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운영위원”을 “위원”으로, “양성평등법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를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장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제10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6조의 제목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및 취소)”로 한다.

제1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수강료 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사천시에”를 각각 “시에”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기증자료의 관리)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소장 자료로 등록한 후 대출·열람하게 해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증도서대장에 등재한다.

③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증을 거부하거나 해당 자료가 필요한 시설에 재기증 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강사위촉 및 강사수당) 시장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791 호

사천시 고시 제2022-16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및 변경승인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및 변경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 8. 11.

사 천 시 장

연번	승인번호	승인 연월일	목적	위치	면적	승인 기간	피승인자	
							주소	성명
1	2022-10	2022.6.9.	구우진항 어촌뉴딜 실시설계용역 지반조사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전면해상	144	2022.6.9.~ 2022.7.8.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
2	2022-11	2022.8.2.	어촌뉴딜300 어촌어항개발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08-24번지선 일원	1587.9 →4000.2	2022.3.11.~ 2051.12.31.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
3	2022-12	2022.8.2	사천해전 전망로 테크설치공사	사천시 용현면 금문리 212-3번지선 일원	243	2022.8.2.~ 2036.12.31.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관광진흥과)
4	2022-13	2022.8.4.	해상부유구조물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용) 설치	서포면 비토리 5-211번지선 일원 (하봉항)	직접:48.0 간접:642.2 전체:690.2	2022.8.4.~ 2036.12.31.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
5	2022-14	2022.8.4.	해상부유구조물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용) 설치	서포면 다평리 1286-5번지선 일원 (갯섬항)	직접:54.0 간접:333.2 전체:387.2	2022.8.4.~ 2036.12.31.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

사 천 시 공 보

제791호

사천시 고시 제2022-167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 8. 11.

사 천 시 장

연번	점용 사용 승인사항				실시계획 신고수리사항			신고자	
	승인번호 (승인일)	승인기간	위치	면적	신고번호 (신고일자)	공사기간	공사내역	주소	성명
1	2022-9 (2022.6.9.)	2021.11.9.~ 2026.12.31.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205-8, 산9-9, 산9-23 번지선 일원	3,531 -작:2,212 -간:1,319	2022-7 (2022.6.29.)	2022.6.29. ~2026.12.31.	해안 데크로드 및 부잔교 설치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관광진흥과)
2	2022-10 (2022.6.9.)	2022.6.9. ~2022.7.8.	서포면 자혜리 전면해상	144	2022-8 (2022.7.29.)	2022.7.29. ~ 2022.8.31.	구우진항 어촌뉴딜 실시설계용역 지반조사)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